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 4차 토론회>

민간인 학살 문제

-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 -

발표 : 이 영 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 강 성 현 (역사학연구소)

때 : 2004년 11월 18일 늦은 7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간인 학살 문제

-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 -

이 영 일

1.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가 흘렀다. 그리고 정전이 된지도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상흔은 분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아물지 않는 아픔과 함께 전쟁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민족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1945년 해방이후 1953년 정전이 되기까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기는 우리 민족이 처한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이 시기 남한에서는 약 100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소위 '빨갱이'이라는 죄목으로 초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학살되었거나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은 이러한 야만적인 학살문제에 대해 전쟁 중이었다는 상황 논리로 방치하거나 침묵으로 애써 외면해 왔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통한과 통곡들을 지난 반세기 동안이나 그토록 무책임하게 방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과연 이 민족의 양심은 존재하는가?'라는 반문과 함께 '대한민국은 과연 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법치국가'라는 물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민족 양심 회복의 문제이며, 이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가로 채는 사회적 잣대이며, 평화와 통일의 민족공존시대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첫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개요와 실태 둘째,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 라는 논제를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개요와 실태

1) 학살의 배경과 성격

(1) 학살의 시대적 배경

1945년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한반도는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명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었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한반도 남한사회의 좌우익 세력간의 폭력적 대립구도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냉전질서 구도하의 물리적 지원에 힘입어 결국은 극우 친일세력의 주도권 확보로 귀결이 되었다.

당시 김구와 여운형은 대중적 영향력은 컸으나 국내의 조직적 기반이 취약했으며, 김일성은 북한에서만 대중적 영향력과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극우 친일세력들은 민족적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떼뻗치 못한 친일경력으로 또 다른 외세인 미국에 기대어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김구로 대표되는 자주적이며 통일된 국가 수립을 열망하는 대중들을 빨갱이로 몰아갔고, 미군정은 미국의 이해와 코드가 잘 맞는 이승만의 안정적인 집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반공단체를 동원해 통일정부를 열망하는 세력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중들을 제거해 나갔다.

이 결과 1948년 8월 15일에는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중도 좌우파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까지 완전히 배제시킨 이승만과 한민당이라는 극우세력 중심의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의 신생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8년 제주 4·3항쟁, 1948년 10월 19일 여·순항쟁 등 여러 지역에서 남한 단독단선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투쟁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라는 외세와 무력을 동원해 이들을 진압하면서 全軍에 걸친 대대적인 肅軍작업을 서두르고 국가보안법 제정(1948. 12. 1)과 국민보도연맹원 결성(1949. 6. 5)으로 해방과 정부수립 공간의 정치적 대립을 정략적인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1950년 6·25 한국전쟁 초기까지 약 2년간의 남한 사회는 취약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지녔던 이승만 정부가 반공이념을 확대 강화해 나가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시켜 권력 기반을 다져 나가는 시기였다. 1949년에는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던 김구가 미군방첩대(CIC) 요원이었던 안두희에 의해 살해

되었고, 1950년 봄에는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반민특위 등 친일파 척결에 앞장섰던 국회내의 소장파 개혁세력들이 반공의 잣대로 숙청되었다. 특히 여운형의 피살(1947. 7. 19)에 이은 김구의 피살(1949. 6. 26)은 남한내의 정치세력 역학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단독정부를 지향한 이승만 세력과 통일 정부를 지향한 반이승만 세력으로 확연히 재편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치사회체제의 형성을 의미했다.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경찰·우익단체들의 조직적인 반공활동과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철저히 통제하므로써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2) 학살의 성격

한국전쟁 전후 학살은 냉전체제 형성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학살로써 여타의 학살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근대화된 국가권력에 의해 매우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나찌 하의 유대인 대학살과는 성격이 다르고, 탈냉전기의 보스니아, 코소보, 르완다 등의 인종간 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인종이 타 인종을 청소(?)한 '사회적 학살'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한국전 당시의 학살은 미군과 한국군이 초토화 작전을 분명히 구사했으며 국가권력이 학살에 앞장서고 또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의도성'을 가진 유대인의 학살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유대인의 학살이 국가권력의 의도 하에 고도로 감정 중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데 비해 한국전의 학살은 정치투쟁, 계급갈등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대단히 감정 개입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인종주의에 바탕을 두고 군인 등 무장세력을 필두로 상당수 사회 구성원이 학살 가담자이자 범죄자로서 가담한 르완다, 코소보 등의 학살이 인종 담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인 반면,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이데올로기를 학살 정당화 담론으로 활용한 것이며, 좌우익으로 갈라진 한국인들 상당수가 학살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으며, 학살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인 모두에게 있었다기 보다는 분명히 좌우익 국가권력 측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대별이 된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일본군이 만주와 남경 등지에서 저지른 학살과도 다르다. 두 학살 모두 국가권력에 의해 의도된 것이고, 초토화 작전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또 국가권력이 시작한 학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보복이 반복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전자가 제국주의 국가가 이민족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발

생했다면 한국전의 경우는 국가 형성과정에서 동족간의 내전 양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앞의 유대인 학살이나 남경대학살은 모두가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인종주의적 편견이 가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등 냉전하의 학살처럼 한국전 당시의 학살은 주로 동족인 한국의 국군과 경찰, 북한의 인민군이나 지방의 좌익에 의해 이루어져 흔히 학살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인종주의는 한국전쟁에 관한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광기가 사적인 보복과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정치적 학살(political massacre)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전세계적인 냉전체제수립 과정에서 극우정권이 수립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대만, 그리스, 베트남에서 발생한 학살과 가장 유사하다. 특히, 스페인, 그리스와 베트남에서는 전선의 계속된 이동으로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불분명한 내전적 상황, 혹은 국내 정치폭력 과정에서 학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의 경우와 공통된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냉전질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우익 정권 수립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의도, 미국 측의 적극적 학살 시행과 현지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을 묵인한 점등이 학살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2) 학살의 규모와 분류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규모

한국전쟁을 전후로 대량학살이 발생하였으나 전쟁 당시 좌우의 양측에 의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는지는 현존하는 자료로는 기록물 부족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학살의 규모는 1960년에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 노현섭 회장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들에 의해 한국전을 전후해 학살된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113만명이다. 이 자료는 경남 25만명, 경북 21만명, 전남 21만명, 전북 19만명, 제주 8만명, 경기 6만명, 충북 5만명, 충남 3만명, 강원 3만명, 서울 2만명이 각각 희생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총살, 생매장, 참살, 수장, 기총사수 등 여러 가지 잔혹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때로는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해 또는 국가권력의 묵인·방조아래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그렇지만 학살의 규모를 단순하게 양적인 문제로 계량화하거나 수치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인간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해야 하는 인권사회에서는 단 한사람의 인권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더우기 현대는 마이카 시대라 하여 '개가 차에 치어 죽어도 개 값을 무는 형국'이 아니던가? 우리는 학살에 대한 숫자적 통계보다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시해야 할 것이다.

당시 남한 정부는 전쟁중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 수를 모두 128,936명(남자 97,680명, 여자 31,256명. 북한 30년사) 정도로 공식 추산하고 있으나,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특히 전라남도가 65,501명으로 가장 많지만 전남에서만 이렇게 많은 이유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쟁전에 좌우 충돌 과정에서 많은 군인과 우익청년단원들이 살해되었으며, 대전, 전주, 원주, 서울 등지에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수백명에서 천여명 이상의 군인과 경찰 가족들, 우익 인사들을 인민재판 등의 방법으로 학살한 점이다. 그리고 유엔군의 진격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측이 수천명의 우익인사들을 원산, 함흥, 평양 등지에서 학살한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수의 약 1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군, 경찰, 우익단체 및 치안유지단이나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빨간 물'이 든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협력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과 군사작전에 방해가 되는 주민들 그리고 친일 전력을 알고 있어 자신의 입신에 걸림들이 되는 사람들 등이 모두 희생양으로 학살되었다. 공산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그리고 미군에 의한 주민학살은 거창과 제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4.19 직후의 자료나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한 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약 1백만명의 민간인이 소위 아군이라 일컫는 남한 군경과 비정규무장대 및 미군 등에 의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대략 분류해보면 제주도에서 약 3만명의 주민과 좌익인사가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평택 이남의 전국에 걸쳐 발생한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에 대한 학살은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보도연맹 가입자가 33만 5천여명(서울 2만명)이었다는 진술(오제도, 선우중원)과 충북에서만 3천여명이 7월에 학살당한 것으로 보아(한지희) 전국적으로 최소 20만에서 30만명 이상이 학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여순항쟁 진압과 토벌과정에서의 학살이 1만명(여수지역사회연구소), 형무소 수감자 4만~5만명, 유격대 토벌 과정과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죽은 이들이 20만~30만명, 미군 폭격과 기총소사의 희생자들이 1만여명 등이다.

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승만 정권과 미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학살은 1백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과 자료들이 최근 속속 발굴, 공개되고 있어 그 동안 정부가 인정한 제주와 거창 규모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민간인들이 이 시기에 학살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민간인학살 사건의 성격

민간인학살은 유엔협약의 제노사이드(genocide) 정의중 "한 집합체 성원들의 생물학적 및 사회적 재생산 정지를 통해 직간접으로 그 집합체의 신체들을 멸한다는 목적으로 희생자들의 항복 또는 위협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Fein, 1990)라는 넓은 의미의 정의 가운데 살인 행위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는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회의(Convention on Prevention and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에서 학살이 전쟁 중이건 평화시에 일어났건간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학살(genocid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살상
- ②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
- ③ 특정 집단의 삶의 조건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할 계산하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일
- ④ 특정 집단의 출생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하는 일
- ⑤ 특정 집단이나 다른 지방의 어린이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일

또한 모든 전쟁이란 곧 양측이 방어력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대량학살과 전쟁을 구별하여 "국가와 여타 권력체가 '악'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의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양상"(Chalk and Jonasson)이라고 정의하여, 학살을 가하는 측에서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적에게 공포심을 확산시키고 경제적

부를 획득하며 특정의 신조,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도연맹이나 부역자 색출과정에서의 학살, 11사단 등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경우, 비무장의 대항력이 없는 민간인을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제거한다는 목적하에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

이처럼 학살은 특정 종교, 인종, 종족, 민족집단의 부분 혹은 전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행동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학살의 정의에는 가해자가 특정 집단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즉 특정 집단을 전멸 혹은 파괴시키려는 '의도'(intention)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상대방 국가나 집단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일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살의 정의에 따라 한국전쟁을 전후로 저질러진 민간인학살의 행위를 가해자인 학살 주체와 피해자인 피학살자별로 학살의 양태를 규명해 보겠다.

① 학살 주체로 본 민간인학살

학살 주체는 남한측에서는 미군, 국방군, 경찰, 서북청년단과 같은 비정규무장대로 대별될 수 있고, 북한측에서는 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 좌익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들 각 주체별로 학살의 양태나 특성들을 살펴보겠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남한의 경우 피난민이 주된 대상이었고, 학살 행위는 주로 비행기의 기총사수였으며 때로는 노근리와 같이 직접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인 기총사격을 가하는 형식이었다. 시기적으로는 주로 전쟁 초기에는 전선 주위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전쟁 후반기는 북한지역에 집중하여 민간인학살이 이루어졌다. 북한 지역의 경우 점령기간인 40일 동안은 야만적이고 직접적인 학살을 자행하였고 후반기에는 주로 북한 전역을 무차별 폭격하여 초토화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북한 주민에 대한 원접학살을 감행하였다. 미군의 민간인학살은 인종주의가 결합되어 상층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군은 전선과 비전선에서 학살을 감행하였다. 전선 학살의 초기에는 주로 남부전선에서 예비검속 등에 의해 좌익 의혹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군경합동으로 학살을 저질렀다. 후기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제2전선 지역에서 11사단 중심의 유격대 토벌과정에서 거창 신원면과 같은 산간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였다. 이들의 학살은 한국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1사단의 작전 지시가 산간지역의 모

든 주민을 적으로 간주한 것이어서 민간인학살은 구조적으로 발생되게 되어 있었다. 비전선에서의 학살은 보도연맹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지역에 걸쳐 부역자나 공비 및 통비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학살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의 특무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특무대장인 김창룡은 '공산당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민간인 열 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무차별 학살은 예정된 것이었다. 부산지역에서 전 가구를 세 차례나 검속하여 수 만 명을 학살한 혐의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 역시 군과 같이 대부분 일제하 일본군이나 경찰 출신으로 반공에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가진 집단이므로 군과 동일한 학살을 저질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찰은 집단적 학살 못지 않게 개인적 수준의 학살이나 만행이 많았다. 물론 군경 모두 자의적 학살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근거는 이승만의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다.

비정규무장대에 의한 학살은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 2300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향토방위특공대(서중석, 1999:631), 1천여 고양 금정굴 학살을 주도한 우익학생 비밀결사체인 태극단, 경북 월성군 민보단장 이협우와 같이 민보단 등 각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자경단이나 치안단 등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들은 제주 4.3항쟁에서 서북청년단이 그 야만성과 무법성으로 악명을 떨친 것처럼 경찰과 군 못지 않게 학살을 저질렀다.

북한측의 학살 주체는 인민군을 중심으로 한 북한정권기관, 빨치산, 지방좌익이다. 인민군 중심의 정권 기관은 북한 법에 의거하여 재판 절차를 밟아 반동에 대한 처형을 감행하는 절제된 형식이었다. 또 공식적으로 만행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이후 후퇴하는 과정에서 법과 재판 및 절제적 처형은 지켜지지 않았고, 형무소 및 유치장에 수감된 우익 반동을 학살하는 만행이 자행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1,300명에 가까운 '반동분자'들에 대한 학살이다. 지방 좌익은 대부분 보도연맹원 학살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복감정에 치우쳐 인민군 진주 직후 보복학살을 주도했다. 빨치산도 토벌대에 비해 학살이나 만행을 자제하였지만 때로는 산간 마을 민간인에 대한 학살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의 대조적인 차이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정권기관 차원에서는 재판과 법 및 고문 금지 등 절제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좌익이나 빨치산이 야만성과 비적법성을 오히려 더 노정시켰다. 반면 남한의 경우는 공권력인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정규군 못지 않게 비적법성과 야만성, 조작성, 무차별성 등을 노정시켰다. 북한 측 학살주체에 의해 저질러진 피학살자 수는 정부의 공식적 주장인 129,000명 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남한 정부나 비정규무장단체 의해 주도된 숫자보다 훨씬 적다.

② 피학살자 기준으로 본 민간인학살

피학살자는 평택 이남의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행해졌으므로 20~25만에 이르는 가장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6.25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학살이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보복살인의 연쇄고리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남한 내의 전반적인 학살의 책임은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형무소 수감자의 학살 또한 대전형무소 1,800명의 학살에서 확인되었듯이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그 숫자는 2만 명으로 추정되나 미결수를 포함할 경우 1~2만이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학살 주체는 공권력인 군과 경찰이었다.

피난민은 미군에 의해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은 군과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학살되는 경우도 있었다(김귀옥, 1999: 265). 이들 피난민은 불특정 다수로서 언제나 군과 경찰 및 비정규무장대의 부역 혐의자로 표적이 되어 무고하게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전선 지역 주민은 언제나 공비와 통비 및 부역혐의자로 몰려 학살에 내몰렸고 아예 11사단의 작전명령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살로서 산간지역 주민들을 모두 통비로 보고 학살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제2전선 주민들은 아마도 보도연맹원 학살의 숫자보다 더많은 학살을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는 주로 그들이 분류한 반동분자인데 이들은 주로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경찰관, 반공연맹원, 국민회지부장, 군인 가족 등을 지칭한다(장미승, 1992: 191).

북한지역에서의 피학살자는 북한 전역에 걸친 불특정 다수 인민들로 미군의 초토화작전에 희생되었고 또 40일 동안 북한을 점령한 시점에서는 주로 노동당이나 정부기관에 종사한 사람과 좌익혐의자였다.

이러한 민간 수준의 인명피해 밖에도 참전군인들의 피해 역시 심대하다. 이에 대한 통계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만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관(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은 유엔군이(대부분 남한군을 지칭함) 전사 628,833명, 실종 470,267, 부상 1,064,453명이고 미군은 전사 54,246명, 실종 8,177명, 전상 103,284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남한군은 약 1백만 가까이 전사 및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위에서 언급한 남한 주도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1백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인구의 12-15%가 감소한 것을 보면 약 1백만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전사 또는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은 약 36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학준의 추정은 남한이 군과 민을 합쳐 약 2백30만 북한이 약 3백30만, 중국군이 약 1백만명이 전사 또는 전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학준, 1989: 345-347).

3.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

1)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

한국전쟁이 한반도의 주민집단에게 안겨 준 상처와 후유증은 너무나 깊고도 컸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미미했다.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당시 학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인간이 야수로 돌변한 사실들을 정면으로 들추어내고 검토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반문명적인 사태를 또 다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현재 한반도 남한의 현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문제이며, 거의 유일하게 지역적 차별과 영호남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민간인학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다름이 아니다. 수치와 오욕의 역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문제삼고 공론화를 해야만 그것을 올바르게 청산할 길도 열린다. 그를 위해 우리는 일단 피해자의 관점과 인권 중심 사관에 입각점을 둘 것이 요청된다.

또한 학살을 명령하고 사주한 자, 지휘한 자, 적극 실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와 한도에서라도 역사적 책임이나마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흑시 불화와 갈등을 낳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적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민간인학살 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두면 다들 편한데 왜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자꾸 떠드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일을 그대로 묻어두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신장을 기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배상)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우리는 과거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법, 정의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개인책임 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라고 하지만 민간인을 세 번을 죽인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전쟁당시의 학살이 그러하며, 60년 4.19 직후 자연발생으로 일어났던 명예회복운동과 묘지조성운동을 5,16 쿠데타 세력이 묘를 파헤친 것이 둘째이며,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하고 한이 맺힌 일인데, 남은 가족과 자식들에게 빨갱이의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평생을 한을 품고 살게 만든 것이 셋째이다.

특히 전쟁 당시 군대가 저지른 일은 근대 이전의 왕조체제에서는 물론, 다른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었으며, 또 이후 군사정권이 각 유족회를 용공단체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군인들이 비석을 부수고 표를 파헤치며 개인묘로 이장하라고 요구한 것은 조선시대의 부관참시(副棺斬屍)에 버금가는 야만적인 행동이며, 유교문화권의 전통적인 효의 윤리의 기초인 자손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고 제사지내는 일도 막은 반윤리(反 倫理)의 극치라 할 것이다.

2) 지금까지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관점과 정부의 대응

(1)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점

이러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의 변화와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반공적인 관점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건의 일체를 좌익활동과 연계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불온시 해 왔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아닌 안정된 국가운영만을 중요시한 결과로서 당연하게 반변혁적 입장을 취해 온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정부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우면서 일체의 비판적

반정부 반체제 활동 모두를 '빨갱이' 소행으로 몰아 부치면서 틈만 나면 '마녀사냥'을 해왔던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단연 일등 공신은 보수 정책들과 논객들이었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경우에도, 좌익 및 부역 혐의와 지방 좌익의 극렬활동에 그 초점을 맞추어 선전해 온 것이다.

둘째는 변혁적, 구조적인 관점으로서 이른바 80-90년대의 운동권적 인식으로 이는 그 동안의 좌익활동에 대해 선협적 내지는 기계적인 파악의 귀결로서, 좌익 활동의 명분과 의의를 인정은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라리 민중의 역사라기 보다는 조선공산당(남로당)의 역사에 가까운 관점을 가져온 것이다.

셋째는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을 단순하게 인적·물적 피해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관념적인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국가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중시하면서 이에 대한 극복책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가와 폭력의 뗄 수 없는 관련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2)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의 이러한 초법적이고도 불법적인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은 할 수만 있다면 사건을 최대한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였다. 그 중에서 거창양민학살, 제주43의 예에서 처럼 극히 일부 사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좌익이나 좌익 혐의자 및 통비분자를 제외한 소위 양민으로 분류되는 우익의 피해에만 국한하여 해결하려는 형식적인 시늉에 그쳐왔다 하겠다. 이는 설령 피학살자가 좌익으로 분류된 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불법적인 조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민간인학살의 문제 해결은 실제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보다는 배상이 아닌 개인적 보상에 치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민원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민간인학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이렇다 보니 그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금까지 냉전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으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죽은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던 것이다.

3) 민간인학살의 인권 및 운동의 성과 문제

(1)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

모든 형태의 전쟁 학살과 정치적 학살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간이 얼마나 더 잔인해 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더 야만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권의 박물관과 같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언급되고 있지만,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주체에게 저지른 폭력,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인종분규나 종족 갈등으로 인한 대량학살이야말로 20세기 문명을 야만으로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리력의 독점 기구'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걸음이고, 이 첫 걸음을 회피하는 모든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유혹을 막아야만 사회 전 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고 재현되어 왔었다. 제주4.3에서 여순사건, 한국전쟁, 베트남 양민학살, 부마민중항쟁, 5.18광주 민중항쟁,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의문사 그리고 최근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강경 진압사례는 가공스런 국가폭력이 강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길들여지고 맞들여짐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그 국가폭력의 사슬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이를 끊어야 한다.

한반도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올바른 신장을 위해, 국가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국가폭력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 땅에 민간인학살과 같은 엄청난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 사회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이제 국가폭력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 소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한반도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2) 사실규명과 운동의 성과로의 이행

또한 과거청산의 문제가 단순한 한풀이 역사로만 노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최근 제주 4.3은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어 최종진상보고서 발표와 함께 지난 2003. 10.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현지에서 정부 차원의 사죄를 하였다. 이는 제주도민과 제주

4.3연구소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문제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국가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명예보상을 이루어 냈을지는 몰라도, 당시의 중요한 한 흐름이었던 변혁적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위해 싸웠던 운동가들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제주4.3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답은 없는 셈이다. 현재의 제주4.3이 전체의 모습을 그려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제주도라는 지역(민) 차원의 논의가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다른 지역과 긴밀한 연대를 맺고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주4.3은 제주라는 특정지역의 사건으로 국한될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과 광주5.18 민중항쟁이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고 전주·정읍 일대와 광주에 국한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현재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제주 4.3의 진정한 해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사실규명인가, 명예회복인가, 보상인가? 이제는 제주 4.3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과 부마민중항쟁, 광주5.18 민중항쟁에 대한 현재의 운동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또한 민간인학살 사건과 같은 과거청산에 대한 언론의 자기비판 실종과 사실 왜곡에 대한 검증도 차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의 사대주의와 권언유착은 실상 남한사회의 대표적인 왜곡언론의 주자인 조·중·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전 언론에 걸쳐 야기된 것으로서 비단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사건 상황을 두고 언론은 이를 어떻게 왜곡하여 보도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검증작업과 치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

우리는 과거청산이라는 것이 국가가 조직적 혹은 계획적으로 저질렀던 국가폭력과 범죄에 대해서 국가폭력과 범죄의 주체인 국가가 또 다시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해야 하는 모순된 현실에서 출발해야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거청산 작업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의 성

격에 직접 좌우되거나, 구 세력이 계속 정치 사회적으로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 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제도적 청산은 가해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가능케 했던 국가보안법 등 남북 적대와 분단을 지탱했던 법, 제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도와 환경에 대한 강조는 개인의 책임성을 희석시킬 위험성이 있지만, 권력의 톱니바퀴 아래에서 대단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을 지나치게 매도하게 될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제도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과거청산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분열된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작업이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과거청산이란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청산이 새삼 논란이 되는 까닭은 사회발전과 역사변화에 따라 지난 날의 과오를 청산해야 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이 뒤늦게나마 비로소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이란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일이다. 과거청산의 의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에 있으며, 이는 진실의 사회적 회복이다. 우리는 과거사에서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책임 있는 자와 가해자들이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청산 작업은 그들이 시인할 수 있도록 은폐된 자료를 찾아내고 또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여론을 모아내는 일이다. 진실이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에 따라 잘못을 범한 당국이나 가해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회는 화해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과거사의 정리일 뿐 아니라 국가 도덕성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와 같은 과거청산은 인류가 물리적인 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할 수 있는 현대 문명사회가 창안해 낸 지혜로운 방법이다. 과거사의 청산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 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행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날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처럼, 예컨대 프랑스혁명 시기와 같이 수구와 개혁 세력간에 보복과 응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고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18, 19세기와는 달리 그러한 사회전환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세계사의 변화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누차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실과 화해 위원회 형식의 과거청산기구가 탄생한 것이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화해를 이루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남아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대표적인 과거청산 기구이다. 그 밖에 과거 군사정권을 경험했던 중남미의 나라들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인종 분규 나라들에서 청산기구들이 설치 운영되었다. 또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정권의 독재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남아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보고서가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관이나 가해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악이나 심리적 문제점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야의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며, 역사 정치적 환경(냉전, 반식민주의, 인종주의), 구성원이 복종함으로써 도덕적 자제력을 마비시키도록 하는 집단의 영향, 집단적 규범의 내면화,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언어들의 기여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청산은 일차적으로는 정의의 수립,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법, 부정, 부패, 탈법, 편의주의, 목적지상주의 등의 사회적 정치적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4. 맺음말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해방 이후의 공간에서 민족 앞에 몇몇치 못한 친일세력이 극우 반공세력으로 변신해, 민족적 이익보다는 새로운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강압적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비상사태와 맞물려 조직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반민족적, 반인권적 중대 범죄로 초헌법적 국가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가테러리즘이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권이라 했다. 인권의 고귀함과 생명의 귀중함을 일컫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학살의 역사적 사실 자체마저 또 다시 '학

살'했다. 학살사건의 본질과 책임은 철저히 은폐, 왜곡된 채 주로 좌익 측에 의한 우익 인사의 학살 사실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고,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 자체가 반국가적인 행동이 되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생존'을 위해 반세기를 침묵해야만 했다.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전쟁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야만적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국민 테러행위로, 결코 전쟁중의 불가피성에서 발생한 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전쟁중이라고 해도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류전쟁사의 교훈이고 제네바협약, 제노사이드 협약 등 국제 평화와 인권협정의 근본 취지일 것이다. 이것이 상실되면 전쟁의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은 한국 인권론에서는 '실종된 원형의 복원'을 의미하는 일이 된다. 학살사건의 은폐된 진실과 전모를 밝히고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은 과거 학살사건 자체의 일회적 문제제기와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론 전반을 재검토하게 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실규명은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 정기의 회복'을 의미하는 일이다. 50여년 전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저질러진 과거의 서글프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 진실을 말하고 반민족적 죄악에 대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양심을 회복하고 민족정기를 고양해 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친일과 청산의 문제와 함께 이 문제가 남과 북, 한민족 성원 전체의 민족적 과업이 되어야 하고, 또한 17대국회를 비롯한 범국민적 책무가 돼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의 민족적 극복은, 모순과 왜곡의 역사를 청산하고, '잊혀진 역사'를 '기억해야 할 역사'로 복원해 내는 작업이며, 평화와 인권 그리고 정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시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역사를 정립해 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족과 인권'의 문제로서 학살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태도가 요구되며,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국가기록물의 공개를 통한 사실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정책적 의지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역사에는 시효만료는 있을 수 없으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80년 광주의 민간인 학살은 일제의 잔재와 친일파를 척결해 내지 못하고 한국전쟁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방치하거나 모른 채 해 온, 민족내부의 모순이 확대·재생산되어 온 결과에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기의 학살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고 좌우, 남북의 대립이 절정에 이른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점이 특징이고, 특히 국내의 법적인 장치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내란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적인 단죄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쟁 시기 발생한 유엔군, 미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제인권법의 기초 위에서 해결하는 방법, 미국의 국가책임을 묻는 방법, 그리고 국내법의 체계 아래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전쟁 중 구성된 국제연합군(UN)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국제연합의 군사활동에 있어서도 전시인도법규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며 또한 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협정이 체결된 선례가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콩고 내전 중에 파견된 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룬 협약은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규정으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 혹은 국가 내 정치세력이나 다른 세력을 학살한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사례는 제2차 대전 후 독일과 일본에서의 전범재판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국제규범은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인 국가주권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대단히 무기력한 장치였다. 한편 미국의 국가 책임 문제도 과거 베트남전 당시의 미라이 학살 사건 처리, 최근의 노근리 사건 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개별 사건을 '고립된' 돌발 사건으로 다루어도 국가적 책임의 차원으로는 절대로 발전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국 UN, 혹은 국제인권기구를 통한 해결, 미국 측에 책임을 묻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은 역시 국내법으로 우선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거의 전원이 국내에 있고, 가해자도 어떤 개인 군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리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고, 관련 국가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한국 내에

서의 구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요구함에 있어서도 당사국인 한국 자체의 책임 인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책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청산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인적·물적 청산을 동시에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과거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 및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갈등없는 사회는 없다. 과거청산 과정에서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 현대사는 과거사에 대한 관대함으로 인해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해야 했다. 잘못된 기정사실에 대한 묵인·방조 및 체념이 혼란의 역사를 부채질 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전진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과거청산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독재정권에 대한 인적·물적인 과거청산은 한편으로 해방후 이루지 못한 일제잔재청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정구, 1992.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동국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동국사회연구』, 창간호
- 강정구, 1995. “베트남의 분단과 미국: 한국분단과 연관지어” 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제4집,
- 강정구, 1996.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 강정구, 1997.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4호
- 강정구, 1999.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황해문화』 봄호
이영희, 『베트남전쟁』, (두레, 1985)
- 眞保潤一郎(조성을 옮김), 『베트남현대사』 (서울: 미래사), 1986.
- 황허이(黃鶴逸)(백은영 옮김), 『도쿄대재판: 도쿄 전범재판의 전말을 통해 일본 보수 우익의 원류를 밝힌다』 예담, 1999.
-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1999.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 국제민주법률가협회, 1989.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김주환역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 권영진, 1990. “6·25살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0년 봄호
- 김귀옥, 1999,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민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낙중.김남기, 1985. 『굽이치는 임진강: 민족통일의 갈망을 안고 임진강을 건너간 한 젊은이의 열정과 고난』 삼민사,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돌베개
- 김득중, 1999.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인식과 민중의 피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자료집』 여순사건 연구총서 2집』
- 김삼웅, 1996. 『해방 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7
- 김성칠, 1993.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
- 김영범, 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 그 역사화를 위하여” <제주4.3연구소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1999.11.21) 발표문>
- 김영훈, 2000. “제주 4.3의 현재적 과제와 전망” 광주항쟁20주년기념 제4회 동아시아

- 아 평화·인권국제회의, 『부활 광주,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로』 발
제문지료집. 2000년 5월 18일-20일 구례 한국통신수련관
- 김종민, 1998. “제주 4.3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2호
- 김주환·유음, 1989.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 김진계 구술·김응교기록 보고문학, 1990.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상)』, 현
장문학사
- 김창후, 1993.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
간 20호, 1993년 봄,
- 대전형무소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2000. “대전형무소 산내 학살사건 진상 중간보
고서” 2000년 7월 8일
-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 『시사저널』, 1995. “문경 양민학살 사건 은폐된 진실 밝혀냈다”, 『시사저널』 1995.
3.23.
- 안종철, 1998.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실
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 편』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 편』 여
순사건 연구조사 1책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1999. 『여순사건 자료집』 여순사건 연구총서 2집
- 오연호, 1994.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백여명 학살 사건” 『말』 1994년 7
월호
- 유지열 편역, 1986. 『베트남 민족해방 운동사』. 이성과 현실사
- 이영희, 1985. 『베트남전쟁』, 두레
- 이정록·김송미·이상석, 1997. 『20세기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푸른길
- 이태섭, 1989. 「6·25와 이승만의 민중통제체제의 실상」, 『역사비평』, 1989년 여름호
- 장미승, 1990.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
평사
- 정은용, 1994.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다리
- 정진상, 1994.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창립10주년기념논
문집, 『계급과 한국사회』
- 정희상, 1990.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르뿐』
서울: 돌베개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2』. 전예원
- 채의진 편저, 1995. 『아 痛恨 四十六年: 문경양민학살 백서 5판』 문경양민학살피해
살자유족회
- 최병수·정구도, 1999. “6·25전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연구(1) : 노근리의 미군 대 양민 집단살상사건을 중심으로” - 주한미군범
죄근절운동본부 엮음, 1999. 『주한미군 범죄백서 :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
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 한국일보 편, 1991.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
정』, 한국일보사
- 황허이(黃鶴逸)(백은영옮김), 1999. 『도쿄대재판: 도쿄 전범재판의 전말을 통해 일본
보수우익의 원류를 밝힌다』 예담.
- 커밍스·할리데이(Bruce Cumings and Jon Halliday), 1990.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 전갑길, 2001.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전갑길 의원실
- 이철호, 2002. “한국의 과거청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그 이후” <여수지역사회연구
소, 제6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2002.10.17) 발표문>
- 김동춘, 2002.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의 경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6
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2002.10.17) 발표문>
- 안병욱, 2004. “현대한국의 과거청산”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과거청
산을 위한 학술심포지움(2004.9.3) 발표문>
- 김동춘, 2004. “한국 과거청산의 기본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해외민주인사
초청 특별토론회(2004.10.15) 발표문>
- Ball, Howard, 1999. *Prosecuting War Crimes and Genocide: The Twentieth
Century Experience*, Kansas: Univ. of Kansas
- Chomsky, Noam. "The Lessons of the Vietnam War: An Interview with Noam
Chomsky" in George Katsiaficas (ed.,) *Vietnam Documents: American and
Vietnam View of the War*. NY: M.E. Sharpe, 1992. Originally in
Indochina Newsletter, no. 18. Cambridge Massachusettes, Nov-Dec, 1982
- Cumings, Bruce. 1981 &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1 & v.2*,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Cummings, Bruce (ed.). 1983.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Endicott, Stephen. 1979. "Germ Warfare and 'Plausible Denial: The Korean War, 1952-53" in *Modern China* v.5, no.1, January 1979
- Feeny, Paul and Jim Allaway, 1992. "The Ecological Impact of the Air War" George Katsiaficas (ed.) *Vietnam Documents: American and Vietnam View of the War*. NY: M.E. Sharpe. Originally from *Air War in Indochina* edited by Rapael Littauer and Norman Upholt, 1972 Beacon Press.
- Felton, Monica. 1953. *That's Why I Went*, Lawrence & Wishart
- Gutman, Roy and David Rieff ed., 1999. *Crimes of War: What the Public Should Know*, NY: Norion & Company
- Herring, George. *America's Longest War, 2nd ed.*, (NY: Alfred Knopf, 1986).
- Hersh, Seymour. 1972, *Cover-Up*, Random House
- Jonassohn, Kurt and Frank Chalk, 2000. "A Typology of Genocide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Human Rights Agenda" in Walliman, Isador and Michael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 Etiology and Case Studies of Mass Death* NY: Syracuse Univ. Press
- Katsiaficas, George (ed.). 1992 *Vietnam Documents: American and Vietnam View of the War*. NY: M.E. Sharpe.
- Knoll, Erwin & Judith Nies McFadden ed., 1970. *War Crimes and the American Conscience*,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Mandani, M. 1976. *Politics and Class Formation in Uganda*. NY: Monthly Review Press
- Marhan Hess. *Then, the Americans Came: Voices from Vietnam*, (NY: Four Walls Eight Windows, 1993)
- Markusen, 2000. "Genocide and Total War: A Preliminary Comparison" in Walliman, Isador and Michael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 Etiology and Case Studies of Mass Death* NY: Syracuse Univ. Press
- McCormack, Gavan. 1983. *Cold War &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Sydney: Hale & Iremonger
-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1952.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Peking
- Merrill, John. 1989.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 of Delaware Press
- Merrill, John. 1983.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Thayer, Thomas C. 1985, *War Without Front: The American Experience in Vietnam*,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 The Vietnam Veterans Against the War, 1972. *The Winter Soldier Investigation: An Inquiry into American War Crimes*(이하 조사서), Boston: Beacon Press.
- Walliman, Isador and Michael Dobkowski ed., 2000. *Genocide and the Modern Age: Etiology and Case Studies of Mass Death* NY: Syracuse Univ. Press
- Winnington, Alan & Wilfred Burchett. 1954. *Plain Perfidy*, London: The British-China Friendship Association,
- Zenner, Walter P. 2000, "Middleman Minorities and Genocide" in Walliman, Isador and Michael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 Etiology and Case Studies of Mass Death* NY: Syracuse Univ. Press

「민간인학살 문제」 토론문

강 성 현

1.

발표자는 이 글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의 시대적 배경과 학살(사건)의 성격, 학살 규모의 실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과 비교할 때 특기할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지만, 과거사청산의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글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대체로 평이한 서술이지만 동시에 표면적·피상적인 서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발표자의 일관된 관점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분석이 표면에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토론은 발표자의 분석을 심화시키기 위해 생각해볼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토론자의 異見을 아울러 제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2.

우선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하고 고민했던 것은 전쟁 이전과 이후에 발생한 민간인학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발표자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학살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당시 한국의 학살을 ‘정치적 학살 (political massacre)’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명명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개념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 원인, 과정, 결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한 성격 규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학살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치적 학살은 통상 어떤 권력집단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제거하는 정치폭력을 포함한 일체의 학살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표면적으로는 단정반대세력, 더 나아가 이승만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학살이었다. 최소한 이승만정권의 인식에는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여운형, 김구, 국회 내 무소속구락부에 대한 제거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 일체에 대한 학살을 의미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4·3’, ‘여순’, 그 밖의 전쟁 전후의 작전으로서의 학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수적

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적의 창출(making enemy)’이었다. 그리고 이는 ‘비인간화’ 작업을 동반했으며, 대체로 ‘빨갱이와 그의 種子, 가족 전체’가 ‘귀축’, ‘악마’ 등의 부정적 존재로 이미지화되는 과정이었다. 여기에는 이념적 언어뿐만 아니라 (유사)인종적¹⁾, 종교적²⁾, 지역적, 문화적, 성적(sexual)의 차이를 드러내는 언어 등이 구사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사(rhetoric)가 정치적 반대세력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사람들과 공동체에게까지 뒹뚱어지는 것이다. 일터, ‘땅’과 ‘바다’에 기대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적·이념적 지향이 거의 희미하거나 전혀 없더라도 이러한 수사에 포박되었을 때, 이들은 꼼짝없이 제거되어야 하는 세력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정권의 ‘左翼視’ 인식과 이해³⁾, 그리고 학살명령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정치사회적 과정이 총체적으로 얽히면서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이해가 지역의 일선 학살명령자에게까지 이어지면, 해당 지역의 학살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고 독자적인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학살의 규모는 작아지거나 없던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쟁 전후의 학살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학살을 넘어서 복잡한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학살에 이르는 정치사회적 과정이 이와 같이 복잡한데, 이를 정치적 학살이라고만 명명할 수 있을까? 초토화작전의 형식으로 국가가 조직적으로 작전 학살한 대상은 과연 정치적 반대세력에 국한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국가폭력의 조직적 개입에 따른 학살보다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분명 존재했던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학살은 정치적 학살에 포함될 수 있을까? 토론자는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을 ‘정치적 학살’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판단을 유보 하겠다. 다만 성격 규명 이전의 조사와 연구 방향에 대한 원칙적 기준을 밝히고자 한다. 즉 1) 어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2) 어떤 집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3) 어떤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학살했는가를 4) 지역별, 시기별(국면별) 분석하고 이후 학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몇 개의 특정 개념으로 명명될 수 있을지,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 이론을 일반화할 수 있

1) 우리의 경우는 인종주의가 생물학적 ‘인종(race)’의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종화(racialization)’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생물학적 인종 차이가 없는 곳에서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하기 위해 ‘인종화’의 정치사회적 과정이 발생한 것인데, 특히 적대적 ‘種子’로 재현되었다.

2) 마찬가지로 종교 신앙의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 언어를 통해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여순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파견된 문인조사반과 종교대표단의 인식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수사, 그리고 여러 신화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따라서 이는 ‘좌익 사상의 보지’의 문제가 아니다.

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심화된 조사와 연구를 통한 내용의 확보이다.

그리고 조사와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4가지 기준이 충실하게 적용되었을 때 2)의 집단인 소위 ‘가해자’와 3)의 집단인 소위 ‘피해자’의 목록도 지역별/시기별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학살이 분명 국가폭력의 양상을 띤 학살이었지만, 그렇다고 ‘가해자 국가폭력 대 피해자 민중’의 구도로 단순 환원되어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가해자 목록에 주로 등장하는 집단을 무조건 고정된 가해자의 전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민보단은 경남지역에서는 가해자 목록에 자주 등장하지만, 총알받이로 동원된 제주에서는 피해자에 가깝다. 그리고 ‘국군’을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것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다. 좌익 숙군 전후의 ‘국군’에는 다양한 동기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대한 상태였다. 개인적인 입신 동기로 입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주와 여수, 순천에서 ‘빨갱이 사냥’ 광풍을 피해 자발 입대한 사람도 있고, 강제로 징병된 사람도 있으며, 학살의 예감을 피해 전쟁 발발 전후 입대한 보도연맹원도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반공전사가 되어 학살 가해자가 되기도 했지만, 총알받이로 그 운명을 마감한 사람들도 꽤 있다. 특히 총알받이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또 다른 ‘죽음으로의 동원’ 양상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국군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보아야 할까? 토론자의 생각에 이들은 분명 피해자이다. 전선 주변 지역, 보도연맹, 형무소수감자 등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외형상 자발성의 형태를 띠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죽음으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3.

다음으로 과거청산 과제로서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문제와 관련해 묻고 싶다. 발표자는 할 수만 있다면 민간인학살을 최대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정부의 관행을 비판하면서, 과거청산이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의 사회적 회복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국가 도덕성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토론자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민간인학살을 국가의 과오이자 책임으로 인정하게 하고, 사과 및 기타 여러 후속조치들을 통한 ‘원상회복’을 국가에 강제할 방법이다. 발표자는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을 논의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보상이 아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위 ‘과거청산 5원칙’이 발표자의 의중에 깔린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난 우리의 소중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원칙의 천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책임 하에 과거청산의 과제가 실시되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는 입법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례에 적절한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역량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⁴⁾ 그리고 더 나아가 ‘진상규명’과 ‘화해’의 양립 가능성, 즉 두 마리 토끼 쫓기의 딜레마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가 문제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발표자가 잠깐 언급하고 있는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 (성공)사례는 ‘철저한 진상조사, 국가적·사회적 명예회복, 국민대통합’이라는 원칙의 천명만으로 결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불처벌과 사면이라는 타협을 통한 화해와 통합에 정면 대결해 얻은 결과였다. 위원회는 인간극(human drama) 형태의 증언청취 과정과 청문회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시켜 철저하게 사실을 고백·사과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사면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물론 가해자들이 조직이나 단체로 응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격으로 응해 사면신청을 위해 형식적인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고, 형식적인 공정성의 논리에 밀려 해방운동의 대항폭력을 국가폭력과 똑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 남미의 사례와 비교할 때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어쨌든 남아공의 사례는 진상규명과 화해의 양립 가능성의 어려움을 토로해준다.

4.

마지막으로 과거청산 과제와 관련한 우리의 과제를 언급하고 싶다. 발표자는 과거청산의 문제가 단순한 한풀이 역사로만 노정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토론자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거창사건’은 거창지역의 한이고, ‘4·3사건’은 제주도의 한이며, ‘노근리사건’은 노근리만의 한이라는 식의 특정 집단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회피의식의 산물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책임’과 관련한 문제이다. 사실 여기저기서 “잊는 편이 나은 기억을 괜히 들쑤셔 사람들에게 왜 혼란을 주는가?”는 요지의 말들을 듣는다. 과거청산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반대 역시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반대의 대다수는 “이렇게 나라

4)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의 교훈을 절실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 분열을 초래하는 좋지 못한 기억들은 묻어두고 가는 편이 낫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가히 ‘책임’이 실종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의 논의를 소개하고 끝맺고자 한다. 그는 나치체제하 독일이 저지른 여러 충격적인 잔혹행위들을 목격하고 난 후에 독일인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논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인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형이상학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정치적 책임이란 국민 모두가 온갖 종류의 학살과 만행을 저지하지 못한 집단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형이상학적인 책임은 누군가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운 좋게 살아남은 데에 따른 집단적인 죄책감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망각과 건망증의 터널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끝>

